

문서번호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908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23. 2. 4.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총장 방침 제(85)호

주무관	산학협력부장	산학협력단부장	산학협력단장	교학부총장	총장
신유정	대결 박종관	전종준	김정현	한문섭	02/04 서순탁
협 조	경영지원팀장 정책기획팀장			양수정 박종관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

2023년 제1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제1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3년 제1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본예산 편성 등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I 심 의 개 요

- 심의일시 : 2023. 1. 31(화) 10:00
- 심의방법 : 비대면 회의 후 서면결의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심의안건	심의결과
(안건1) 2023년도 학교기업 본예산 편성(안)	원안의결
(안건2) 2023년도 산학협력단 본예산 편성(안)	원안의결
(안건3)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개정(안)	원안의결
(안건4)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 기준」 개정(안)	원안의결

II 심 의 내 용

【안건1】 2023년도 학교기업 본예산 편성(안) : 원안의결

학교기업 「더고구마」

○ 세입예산 : 437,912,100원

-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7,145,308원 증액(4.1%)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원)	증감율(%)
손익계정수입	260,400,000	277,661,016	-17,261,016	-6.2
기본금변동수입	60,000,000	51,023,790	8,976,210	17.6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17,512,100	92,081,986	25,430,114	27.6
세입 총계	437,912,100	420,766,792	17,145,308	4.1

○ **세출예산 : 437,912,100원**

-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7,145,308원 증액(4.1%)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원)	증감율(%)
손익계정지출	310,600,000	283,900,790	26,699,210	9.4
부채변동지출	17,120,235	60,549,406	-43,429,171	-71.7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10,191,865	76,316,596	33,875,269	44.4
세출 총계	437,912,100	420,766,792	17,145,308	4.1

학교기업 「시공간분석연구소」

○ **세입예산 : 51,331,990원**

-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3,057,030원 감액(-55.1%)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원)	증감율(%)
손익계정수입	50,000,000	82,358,945	-32,358,945	-39.3
기본금변동수입	0	6,966,205	-6,966,205	-1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331,990	25,063,870	-23,731,880	-94.7
세입 총계	51,331,990	114,389,020	-63,057,030	-55.1

○ **세출예산 : 51,331,990원**

-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3,057,030원 감액(-55.1%)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원)	증감율(%)
손익계정지출	50,000,000	51,913,870	-1,913,870	-3.7
자산변동지출	0	3,166,071	-3,166,071	-100
부채변동지출	0	46,809,079	-46,809,079	-1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331,990	12,500,000	-11,168,010	-89.3
세출 총계	51,331,990	114,389,020	-63,057,030	-55.1

【안건2】 2023년도 산학협력단 본예산 편성(안) : 원안의결

□ 산학협력단

○ 세입예산 : 110,628,914천원

-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280,234천원 감액(-1.1%)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원)	증감율(%)
산학협력 수익	21,226,310,000	20,305,790,000	920,520,000	4.50%
지원금 수익	44,129,626,000	43,157,616,000	972,010,000	2.30%
간접비 수익	11,697,300,000	11,621,913,000	75,387,000	0.60%
전입및기부금 수익	0	0	0	0%
운영외 수익	391,000,000	430,000,000	-39,000,000	-9.10%
투자자산수입	0	4,523,892,318	-4,523,892,318	-100%
기초의 자금	33,184,678,479	31,869,937,161	1,314,741,318	4.10%
세입 총계	110,628,914,479	111,909,148,479	-1,280,234,000	-1.1%

○ 세출예산 : 110,628,914천원

-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280,234천원 감액(-1.1%)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원)	증감율(%)
산학협력비	24,141,582,000	23,712,300,000	429,282,000	1.8%
지원금사업비	44,697,932,000	43,440,429,000	1,257,503,000	2.9%
간접비사업비	11,336,276,000	10,484,941,000	851,335,000	8.1%
일반관리비	116,400,000	116,400,000	0	0%
운영외비용	10,000,000	50,000,000	-40,000,000	-80.0%
학교회계전출금	200,000,000	220,000,000	-20,000,000	-9.1%
투자자산 지출	510,000,000	700,400,000	-190,400,000	-27.2%
기말의 자금	29,616,724,479	33,184,678,479	-3,567,954,000	-10.8%
세출 총계	110,628,914,479	111,909,148,479	-1,280,234,000	-1.1%

**【안건3】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및 개정(안)
: 원안의결**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혹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사항을 우리 대학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체계 확대

주요골자

- 연구비 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 집행 불가능한 경우 집행 방법 신설
- 연구비카드 발급 전 부득이한 경우 개인카드 사용 허용 근거 신설
- 선배정 지원금 중 지원기관에서 승인하는 경우 사용 항목 확대
 - 정부 용역 과제의 경우 “연구수당” 사용 허용
- 민간 용역 과제의 간접비 징수율을 직접비 기준으로 변경
 - (기존) 총 연구비의 15% → (개정) 직접비의 17.64%

사업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자체) 용역	민간용역	비고
간접비 징수율 기준	기존	직접비의 27.34%	직접비의 6%	총 연구비의 15%	직접비 기준 통일
	개정	동일	동일	직접비의 17.64%	

- 페이퍼리스 근거를 위한 조항 및 수정된 세칙명 반영

**【안건4】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안)
: 원안의결**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 필요사항 반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서 자체기준으로 위임하는 사항 기준 재정비

□ 주요골자

○ 인건비 계상기준 : 4대보험 기관부담금 개정

- (기존) 월 급여의 9% → (개정) 월 급여의 11%

※ 2023년 4대보험 기관부담 요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4.5%	4%	1.75%	0.8825%	11.6325%

○ 외부기관장 확인서 제출 대상 과제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축소

○ 학생인건비 계정대체 일자 변경 : 상위 규정 반영

- (기존) 즉시 → (개정) 연구비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중앙구매 대상 금액 개정

- (기존) 부가세 미포함 → (개정) 부가세 포함

○ 연구활동비

-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

- 자문료 지급 기준 상향 조정

- 출장비 지급 기준 세부 사항 명기

- 연구인력 지원비 중 야근식대 기준 금액 상향 조정

○ 간접비 계상기준 : 민간용역과제 간접비 징수율을 총 연구비에서 직접비 기준으로 통일되는 사항 반영

- (기존) 총연구비의 15% → (개정) 직접비의 17.64%

○ 별지 서식 재정비

- 연구과제 참여계약서 서식 수정

- 불필요한 서식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경우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기관장 확인서

Ⅲ

향 후 계 획

- 2023. 2월 초~: 규정 공포
- 2023. 2월 중 : 한국사학진흥재단 예산서 제출

- 붙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3. 심의자료(별첨자료) 1부.
4. 회의록 1부. 끝.